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즌6 제7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예술 통합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칸트의 관점과 그에 대한 비판

지문 평가

(가)에서는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나)에서는 칸트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두 관점의 차이점에 주목한다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가)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을 반박하는 7번 문항과, (나)의 관점에서 (가)의 관점을 비판하는 8번 문항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Keyword

(가), (나) 예술 – 미술 철학 – 칸트

칸트, 자연미, 예술미, 목적론, 기계론, 합목적성, 반성적 판단력, 미감적 표상, 목적 없는 합목적성, 취미 판단, 근대적 관점, 이념, 자연적 충동

(가) 문단 ① 목적론과 기계론을 비판한 칸트

1) 칸트는 자연에서 드러나는 **자연미**가 인간에 의해 창조되는 **예술미**에 우선한다고 말하며, ……

➡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다. 자연미가 예술미에 우선한다면, 우리도 자연미에 초점을 맞춰 지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

2) …… 자연을 **목적론**적으로만 바라보면서 미를 신의 의도에 예속시키는 전근대적 관점과 자연을 **기계론**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자연미의 가치를 폄훼하는 근대적 관점 모두를 비판했다. 목적론은 자연과 인간의 일이 모두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기계론은 그런 일이 단지 인과 법칙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자연에 대한 '목적론 = 전근대적 관점'과 '기계론 = 근대적 관점'이 제시되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목적론 = 전근대적 관점	기계론 = 근대적 관점
자연은 모두 목적이나 의도에 의한 것	자연은 단지 인과 법칙에 의한 것

➡ 칸트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들과 구별되는 칸트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을 지문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가) 문단 ② 자연의 합목적성과 자연미

1) 칸트는 자연이 기계성뿐 아니라 목적성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합목적성**이란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말한다.

주목 칸트에 따르면 자연은 '목적성'과 '기계성'을 동시에 지닌다. 즉 칸트는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목적론과 기계론을 모두 수용하고자 했다. 목적론에 대해서는 '인과 법칙'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기계론에 대해서는 '자연의 의도'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양쪽 모두를 비판한 것이다[문단1–2].

2)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이 지닌 일정한 의도를 실제로 관찰할 수는 없으나, 자연이 합목적성을 지니는 것으로 대할 수 있는 반성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 인간은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심미를 위한 것으로서의 **미감적 표상**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는 태도, 즉 무관심적인 관조로부터 떠오르는 것이다.

➡ 칸트에 따르면 자연은 목적성을 지니지만, 그것을 인간이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자연으로부터 '미감적 표상'을 떠올릴 수 있다.

> 반성적 판단력 [+ 무관심적인 관조] ⇨ 미감적 표상

➡ 자연을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성적 판단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오히려 주체가 어떤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는 태도를 지닐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이른바 자연미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기초할 때에 다가온다.

➡ 여기서 '자연미'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감적 표상'을 가리킨다.

주목 칸트의 입장을 아우르는 문장이다. 즉 인간은 어떠한 목적도 없이 [→ 무관심적 관조], 자연은 마땅히 목적을 갖는다는 태도[→ 반성적 판단력]로 자연을 대함으로써 자연미[→ 미감적 표상]를 얻을 수 있다.

➡ 이는 '인간의 목적'은 내려 두고, '자연의 목적'은 긍정하는 태도를 토대로 해야만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가) 문단 ③ 자연미와 예술미의 관계

1) 칸트는 쾌, 불쾌를 주는지에 따른 판단인 **취미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자연미와 예술미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으나, 형식 면에서는 예술미가 자연미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자연미'에서 '자연미와 예술미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칸트는 자연미가 예술미에 우선한다고 보았음을 기억하며 독해를 이어 나가자[문단1–1].

➡ '취미 판단'의 '취미'는 게임이나 독서 같은 활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을 뜻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쾌감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며, 불쾌감을 주는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한다.

➡ 이는 자연미와 예술미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즉 자연미는 예술미에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예술미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예술미가 형식적으로 자연미를 능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미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2) 다만 예술 작품은 대개 완전성을 목적으로 삼아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예술미는 수단적인 미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이와 달리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기초한] 자연미는 목적에 매개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예술미에 우선한다.

주목 칸트에 따르면 예술미는 '완전성'이라는 목적에 매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자연미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목적에 매개되지 않으므로 예술미에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문단1–1].

3) 그는 자연미의 이러한 특성이, 우리가 아무런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도 인간이 처한 현실에 적용되는 도덕적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도덕적 감정을 길러 온 인간의 마음 상태에 자연미가 잘 들어맞는 것이다.

➡ 칸트에 따르면 인간에게 자연미가 다가오는 것은 '도덕적 감정'을 떠올리는 것과 유사하다. 둘 다 어떠한 목적 없이도 떠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감정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 결부된 것이지만,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순수한 도덕적 감정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가) 문단 ④ 참된 예술

칸트에 따르면 예술이 비록 예술가의 의도에 기초해 있지만 그것이 참된 예술이 되려면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예술에 규칙을 부여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천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천재에 의해 성립된 예술미는 자연미와 다르지 않다.

➡ 칸트가 이해한 '참된 예술'에 대한 설명이다. 참된 예술은 자연을 모방해야 한다. 인간은 '목적 없는 합목적성'을 통해 '자연'에서 자연미를 떠올릴 수 있는데[문단2–3], 마찬가지로 '자연을 모방'하면 인간의 목적을 배제함으로써[→ 완전성 등을 목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참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문단3–2]. 즉 '자연미'와 다르지 않은 예술미를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다만 실제로 '자연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천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예술은 '예술가의 의도'에서 비롯되므로 예술가 스스로가 자신의 의도를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나) 문단 1 칸트에 대한 근대적 관점의 비판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자연미를 우선시함으로써 예술미를 깎아내리고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인류의 역사를 정신이 발전해 온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미는 그저 인과에 의한 산물일 뿐 정신의 탁월성에 의해 창조된 미[→ 예술미]가 아니다. 개념과 실재의 통일인 **이념**을 진정한 미로 규정하는 이 관점에서 자연미는 개념적 인식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 (가)에 대한 '근대적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비판의 핵심은 칸트가 자연미를 예술미보다 우선시하였다는 점이다. '근대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은 기계성만을 갖는다[(가)의 문단1–2]. 즉 자연에는 정신의 요소가 깃들어 있지 않으므로, 자연으로부터 떠오르는 '자연미'는 인간이 창조하는 '예술미'에 비해 열등한 것이다.

➡ '근대적 관점'에서는 '자연미와 예술미의 우열 관계'를 인정한다. 즉 '예술미'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칸트는 자연미와 예술미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았다.

(나) 문단 2 자연미의 중요성

1) 하지만 근대적 예술이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합리성에 경도되어 기술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연미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되어야 한다.

➡ (나)는 '근대적 관점'에 따라 (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는 (가)의 '자연미를 우선시한 칸트의 관점'에 부합한다.

2) 근대의 계몽적 질서 아래에서 인간은 자연을 객체로 삼음으로써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개별 자연 대상들은 그 자체의 고유성을 잃고 그것에 부여된 개념들로 구성된 추상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이 모조리 추방되는 계몽 사회일수록 예술미는 자연미의 긍정적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나)의 관점은 '근대의 계몽적 질서'에 대한 반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자연미는 열등한 것, 예술미는 우등한 것으로 이해하는 질서'로 볼 수 있다[문단1].

주목 ▲ 결국 (나)는 계몽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속성'을 긍정하는 자연미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에 따르면 '계몽 사회'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다음 표현들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자연의 속성 부정, 인간과 자연의 분리, 자연의 고유성 상실

3) 다만 자연미와 예술미를 조화시키려 했던 칸트의 이론은 무관심적인 관조만을 강조할 뿐이며, 예술이 그저 자연을 닮도록 요구함으로써 경험적 현실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맥락 짚기 ▼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나)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에서 '칸트가 이해한 자연미와 예술미'를 설명하였다면, (나)에서는 그러한 칸트의 이해가 완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글쓴이의 주장과 칸트의 주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지문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주목 ▲ 칸트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자연미의 중요성'을 내세우고자 한다. 다만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 칸트가 내세운 '자연의 모방을 토대로 하는 참된 예술'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가)의 문단4]. 무관심적인 관조의 태도로 자연을 그저 모방하기만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계몽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나) 문단 3 바람직한 예술의 조건과 의의

1) 계몽 사회에서도 예술은 자연과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그것에 동화되는 힘인 **자연적 충동**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의 합리적 계기인 구성의 원리가 뒷받침됨으로써 일시적이고 거친 표현이 내적 필연성에 따라 조직되어 창조적인 표현에 이를 수도 있다. 예술의 합리적 계기는 비록 합리성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자연적 충동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조적으로 발휘될 때에 진정한 예술미를 낳을 수 있다.

➡ '진정한 예술미'는 (가)에서의 '참된 예술'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가)의 문단4]. 여기서의 핵심은 '자연적 충동'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성의 원리		자연적 충동
예술의 합리적 계기 내적 필연성에 따른 조직	+	자연에 동화되는 힘 일시적이고 거친 표현

⇩

> 진정한 예술미[→ 참된 예술]

2) 이는 예술 작품이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을 잃고 대상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술 스스로 계몽의 시대에서 사라진 자연의 고유성과 유사해지는 것으로, 자연이 고유한 몸짓을 보이듯이 예술 작품도 어떤 것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작품 자체로서 고유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칸트의 시도와 달리 예술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자연미를 닮고자 함으로써 고유성이 사라진 시대에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나)의 글쓴이에 따르면 '계몽 사회'에서는 자연의 고유성이 상실되었다[문단2–2]. 그러나 '진정한 예술미'를 이룩한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고유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로부터 '자연미'를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체로 고유한 표현이 된 예술 작품은 고유성이 사라진 시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다.

주목 ▲ 특히 (나)의 글쓴이는 '자연'과 '자연미'를 구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연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가)의 문단4].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자연 자체를 모방하는 데에 치중하면 예술 작품의 고유성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상화]. 즉 계몽 사회를 극복하기는커녕, 그것을 이루는 일부가 된다[문단2–2].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칸트 : 우리는 자연이 마치 예술의 산물인 것처럼 자연에 접근해야 하며, 예술이 마치 자연의 산물인 것처럼 예술에 접근해야 하네. 그래서 작품이 아름다우려면 작품 속 표상[→ 미감적 표상]이 의존하게 되는 실제의 자연 대상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자연미를 통해 기계적인 조직으로서의 자연을 넘어 예술로서의 자연[→ 참된 예술]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네.

맥락 짚기 (가)에 부합하는 '칸트의 관점'을 그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나)의 글쓴이의 관점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나)의 글쓴이는 '자연미의 중요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자연을 모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나)의 문단3-2)].

➡ '자연이 마치 예술의 산물인 것처럼', '예술이 마치 자연의 산물인 것처럼', '예술로서의 자연'과 같은 표현에 주목하자. 이는 모두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자연미와 다르지 않은 예술미에 도달하는 작업을 가리킨다[(가)의 문단4].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입장을 연결해 보면, 선생님의 견해에는 [㉮]는 비판이 가능해집니다.

∴ (나)의 글쓴이에 따르면 칸트의 주장대로 '자연을 모방'한다면 예술 작품은 오히려 대상화될 우려가 있고, 계몽 사회를 극복할 수가 없어진다. 즉 참된 예술을 위해서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미를 닮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①번 선지는 적절하다.

참고 정답 선지의 '자연을 닮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는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직접 떠올릴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선지를 대하는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칸트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자연미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의해 떠오르는 것이다[(가)의 문단2-3)]. 그런데 〈보기〉의 칸트의 주장과 같이 자연을 모방할 목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것은, 결국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자연을 대하는 셈이 된다. 오히려 '자연미'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10~13] 사회

신주 인수권의 침해

지문 평가

핵심은 지문의 초점을 그때그때 잘 좁혀 나가는 데에 있다. '신주 인수권의 침해'가 왜 문제가 되고, 그것의 무효 판단이 왜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니, 흐름을 차근차근 잘 좇을 수 있도록 하자.

Keyword

사회 – 법학 – 신주 인수권

신주, 주주, 상법, 신주 인수권, 신주 발행 유지 청구, 신주 발행 무효의 소, 불공정, 주주 평등의 원칙, 주주의 충실 의무

문단 1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과 신주 인수권의 침해 문제

1)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인 **신주(新株)**를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그 지분만큼 지니므로, 신주 발행은 회사의 지배 구조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법**은 신주 발행 시 기존 지분만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한다.

➡ 발행된 신주를 제3자가 취득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결권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는 '신주 인수권'이 보장된다. 자신의 지분만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유지되므로 의결권도 유지되는 것이다.

신주 우선권 행사 ⇨ 기존 주주들의 지분 유지 ⇨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 유지

2)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의 침해에 대해 기존 주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졌다. '신주 인수권'은 결국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것을 누군가가 '침해'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문단 2 신주 발행의 무효 판단의 유형

1) 기존 주주는 신주 발행의 중지를 위해 **신주 발행 유지(留止) 청구**를 할 수 있고, 신주 발행 후에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신주 인수권의 침해'에 대한 기존 주주의 대처 방안은 그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신주 발행 전 : 신주 발행 유지 청구
- 신주 발행 후 :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제기

참고 이때 유지(留止)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변함없이 계속한다는 뜻의 유지(維持)가 아니다. 여기서는 누군가의 위법 행위[→ '신주 인수권의 침해']가 우려될 때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2) 다만 무효의 경우 자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의 이유로 그 판단에 신중을 요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신주 발행 후에 이루어지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 내용이 좁혀지고 있다.

➡ 신주 발행의 무효 판단에 신중을 요한다는 말은 곧 주주의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효'의 판결을 얻어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신주 인수권의 침해'에 대처할 수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의로 신주를 구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며, 신주가 최초 구입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효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3) 신주 발행의 무효 원인으로는 그 발행이 법령의 관련 규정이나 회사의 정관에 위반되는 것과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있다.

➡ '신주 발행의 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되 각각 왜 판단에 신중을 요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인❶ : 신주 발행이 법령의 관련 규정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됨
- 원인❷ : 신주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함

4) 전자와 달리 후자의 판단이 어려운데, 상법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는 **'불공정'**은 일반적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이나 주주의 충실 의무에 위배됨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 특히 '현저하게 불공정함'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됨'의 경우에는 법령과 정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만, '불공정'에는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 의미를 따지는 데에 '해석'을 요하기 때문이다.

➡ 상법에서 거론되는 '불공정'은 대개 '주주 평등의 원칙' 위배와 '주주의 충실 의무' 위배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진다.

문단 3 주주 평등의 원칙과 주주의 충실 의무 위배

1) **주주 평등의 원칙**은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당성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함을 뜻한다.

➡ 먼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성 있는 불평등한 대우'는 괜찮지만, '정당성 없는 불평등한 대우'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다.

2) 구주 10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면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없더라도 10주 미만의 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원칙의 위배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신주 발행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것처럼 정당성이 없을 때에 한해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 구주 10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신주 인수권은 불평등한 대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신주 발행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불평등한 대우더라도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목▲ 핵심은 '신주 발행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즉 '신주 발행의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신주 발행의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면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때 '정당성 있음'의 예시로 '자금 조달의 목적'이[문단1-1)], '정당성 없음'의 예시로 '경영권 강화'가 주어졌다는 점도 짚어 두자.

➡ 이때 정당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신주 발행을 통해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게 됨을 가리킨다.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 경영권을 가진 주주의 지분을 높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정 주주의 지분↑
⇩
특정 주주의 의결권↑
⇩
특정 주주의 경영권 강화[→ 나머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 침해]

3) 한편 **주주의 충실 의무**란 주주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데에 주주의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어서 '주주의 충실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4) 경영상 필요한 합당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지배 주주가 소주주의 지분율을 낮출 목적으로 주주 총회에서 신주의 제3자 배정을 결의한다면[→ 신주 인수권의 침해] 이는 합법적인 주주권 행사일 수 있으나 충실 의무 위배일 수 있다.

➡ '신주 발행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는 '주주 평등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목▲ '정당성 없음'의 새로운 예시로 '지분율을 낮출 목적'이 주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이번에는 지배 주주[→ 맥락상 경영권을 지닌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소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게 된다.

제3자의 지분↑
⇩
소주주들의 의결권↓
⇩
지배 주주의 경영권 강화[→ 소주주들의 신주 인수권 침해]

문단 4 신주 발행이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와 기준

1)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자금 조달의 목적[→ 신주 발행의 정당한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 관계에 변동을 준 경우, 소주주를 축출하려는 경우, 특정인에게 집중 배정한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지배 관계에 변동을 주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한 경우는 법령의 위반에도 해당한다.

➡ 사실상 문단3의 요약이다. '지배 관계에 변동을 준 경우' 중에서도 문단3-4)와 같이 '제3자 배정'을 통해 수행한 경우에는 '법령의 위반'에도 해당한다. 두 가지 무효 원인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확실하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2) 그런데 실제 무효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지배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배 관계에 영향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만 있으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 밖에 발행된 신주 중에서 지배적 이익 침해를 알고 있는 주식 인수자가 취득한 신주만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열거된 정보들을 적당히 챙기고 취지에만 주목하자. 결국에는 그만큼 '무효'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문단 5 신주 발행의 무효 판단의 현실적 어려움

다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하거나, 나아가 이를 이유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신주를 발행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없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지배 주주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이 드러나거나 기존 주주로 하여금 자기 이익의 구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뚜렷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한해 신주 발행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신주 발행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다[문단3-2)].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신주 발행의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현저하게 불공정함'].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주목 ▲ 다만 '현저하게 불공정함'의 가능성이 높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효'의 판단은 잘 내려지지 않는다. 이는 두 가지 무효 원인 중에서도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행위'가 존재해야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현저하게 불공정함'] 신주 발행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X 회사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 주주인 A는 각각 지분 30%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 대표 이사인 B와 C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려는 협의를 하고 있었다.

➡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배 주주 A의 지분이 협의를 거쳐 B, C에게 양도된다면 '지배 관계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협의에 의한 결과이지, '신주 발행'의 결과는 아니다[문단4-1)].

2) 그런데 협의 진행 중인 시기에 X 회사는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A는 K에게 주주 총회 참석을 위임했으나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관에 따라 참석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법령과 정관에 따라, X 회사는 신주 청약의 방법과 일자를 A에게 정확히 통지했음에도 A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A의 신주 인수권은 상실되었다.

➡ 이러한 협의와는 별개로 '신주 발행'이 결의되었다. 즉 원래대로라면 A는 자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 인수권을 가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A가 청약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법령과 정관'에 따라 A는 신주 인수권을 상실하였다.

주목 ▲ 종합하면 A는 신주 인수권을 상실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신주 발행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즉 '현저하게 불공정함'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3) 이에 A는 신주 발행으로 인해 적정 대금의 주식 양도가 불가능해지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에서 신주 발행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법원'이 신주 발행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 이유다. A의 신주 인수권이 상실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신주 발행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무효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문단5].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다.

[14~17] 과학

오탄당 인산 경로와 NADPH

지문 평가

정보량이 상당한 지문일수록 역설적으로 지문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문의 초점과 관련이 깊어서 분명히 파악하고 가야 하는 개념과, 나중에 지문으로 돌아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개념을 구분하는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오탄당 인산 경로'의 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했는지가 관건이다.

Keyword

과학 – 생리학 – 오탄당 인산 경로

포도당, 피루브산, 당 분해 경로, 과산화 수소, NADPH, 오탄당 인산 경로, 6-인산 포도당(G6P), 인산화, 6-인산 포도당 탈수소 효소(G6PD), 6-인산 글루콘산 탈수소 효소, NADP, 글루타티온, 싸이올기,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 이황화 글루타티온

문단 1 세포 내부의 포도당

1) 음식으로 섭취된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인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따라 각 세포에 전달된 후, 세포 내부에서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당 분해 경로**를 거쳐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세포에 유해한 독성 물질인 **과산화 수소**가 부산물로 생성되는데, ……

➡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 분해 경로'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산화 수소'가 함께 생성된다는 문제가 있다.

2) …… 세포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NADPH를 생산한다. **오탄당 인산 경로**는 NADPH를 생산하는 물질대사들 중의 하나로, 이 경로에서도 포도당이 사용된다.

➡ 다행히도 세포는 '오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 내부의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는 NADPH를 생산할 수 있다[→ '오탄당 인산 경로'가 NADPH를 생산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챙겨 두자.].

맥락 잡기 ▼ 그런데 '오탄당 인산 경로'에서도 '당 분해 경로'와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지문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❶ '오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 어떻게 NADPH를 생산하는가?
❷ NADPH는 어떻게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는가?
❸ 포도당은 언제 '오탄당 인산 경로'에 사용되고, 언제 '당 분해 경로'에 사용되는가?

문단 2 포도당의 G6P 전환

1) 세포 내부로 유입된 포도당은 당 분해 경로나 오탄당 인산 경로가 시작되기 전에 이내 **6-인산 포도당(G6P)**으로 전환된다. 이는 포도당에 인산기가 결합하는 반응인 **인산화**를 통해 일어난다. 이때의 인산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분자인 ATP에서 분리된 것으로, 이로써 ATP는 ADP로 전환된다.

➡ '당 분해 경로'에서든 '오탄당 인산 경로'에서든, 포도당은 일단 세포 내부로 유입되어야 쓰일 수 있다. 포도당은 세포 내부에서 G6P로 전환되는데……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포도당 + 인산기 —(인산화)→ 6-인산 포도당(G6P)

2) G6P는 포도당보다 부피가 커서 포도당의 유입 통로인 포도당 수송 단백질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포 내부에 축적된다. 또한 이렇게 포도당이 G6P로 전환됨에 따라 세포 내부의 포도당 농도 상승이 억제되어 포도당 유입이 농도 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지속될 수 있다.

➡ 세포 내부로 유입된 포도당이 G6P로 전환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G6P로 전환되면서 부피가 더 커져 포도당이 다시 세포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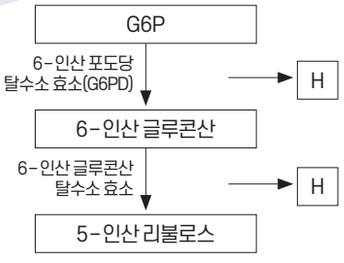
➡ 둘째, 포도당 농도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도당 수송 단백질'을 통한 유입은 '농도 차이'로 인해 가능한데[→ 세포 내부의 포도당 농도가 세포 외부의 농도보다 낮아서], 세포 내부에 포도당이 계속해서 쌓이면 언젠가는 농도 차이가 뒤집혀서 세포 내부의 포도당이 세포 외부로 유출될 것이다. 그래서 내부의 포도당은 G6P로 전환함으로써 포도당의 농도를 외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문단 3 NADPH의 생성

1) 오탄당 인산 경로가 시작되면 먼저 **'6-인산 포도당 탈수소 효소(G6PD)'**의 작용으로 G6P가 6-인산 글루콘산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6-인산 글루콘산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6-인산 글루콘산이 5-인산 리불로스로 전환되는 과정이 연이어 나타난다. 두 과정은 각각 수소 원자[→H]가 하나씩 분리되는 과정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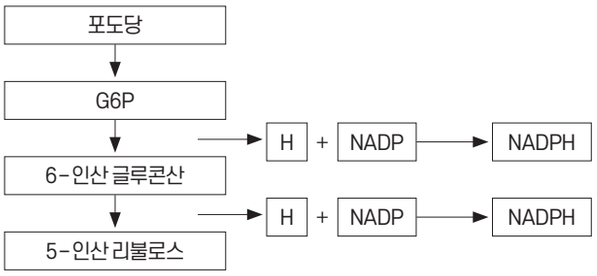
맥락 짚기 과학 지문, 특히 생리학 지문에서는 지금처럼 낯선 용어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 시험은 암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들이 낯설다는 이유로 헤맬 필요가 없다. 대략 기억해 두고, 선지를 판단할 때 확인 차 돌아오면 된다.

➡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오탄당 인산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단계별로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2) …… 이들 수소 원자는 세포 대사에 사용되는 물질인 NADP와 하나씩 결합하여 두 개의 NADPH 분자 생성에 기여한다. 오탄당 인산 경로는 최종적으로 유전 물질의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경로인데, 그 과정에서 NADPH도 생성되는 것이다.

➡ ❶에 대한 설명이다[문단1-2)]. 다만 '오탄당 인산 경로'가 곧 NADPH를 목적으로 하는 경로는 아니다. 유전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NADPH가 두 개씩 만들어지는 것뿐이다.



문단 4 과산화 수소의 제거

1) 이렇게 생성된 NADPH는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는 **글루타티온**의 작용을 돕는다. 글루타티온 한 분자는 황 원자[→S]와 수소 원자[→H]가 결합된 **싸이올기**를 포함하고 있다. 싸이올기에서 글루타티온 본체에 결합되어 있는 쪽은 황 원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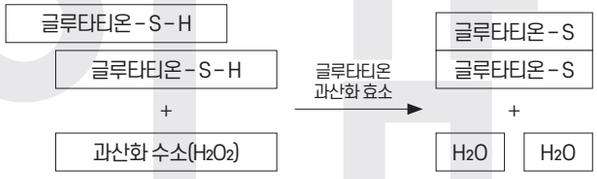
➡ ❷에 대한 설명이다[문단1-2)]. 다만 과산화 수소를 NADPH가 직접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글루타티온'의 작용을 도울 뿐이다. 이때 '글루타티온'의 구성인 '싸이올기'가 과산화 수소의 제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글루타티온-S-H[→싸이올기]

2) ['당 분해 경로'를 거쳐] 세포 내부에 과산화 수소가 발생하면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의 작용에 의해 글루타티온 두 분자 각각의 싸이올기에서 분리된 수소 원자가 과산화 수소와 결합하고, 이를 통해 과산화 수소 한 분자는 두 개의 물 분자로 전환되면서 제거된다. 남은 글루타티온 두 분자는 황 원자들 사이의 결합에 의해 **이황화 글루타티온** 한 분자로 있다가 ……

➡ 글루타티온에 의한 과산화 수소 제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려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필요한데, 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두 개의 글루타티온'이다. 글루타티온의 싸이올기 끝에는 수소 원자가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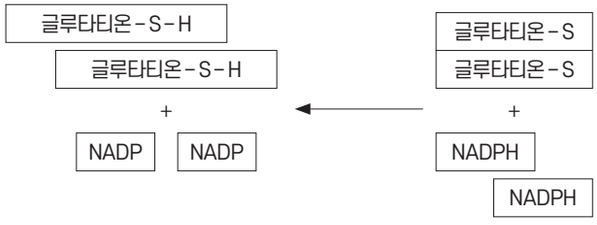
➡ 수소 원자를 잃은 두 개의 글루타티온은 이후 서로 결합하여 '이황화 글루타티온'을 이룬다.



3) …… 수소 원자들과 결합하면서 글루타티온 두 분자로 다시 분리된다. 이때 결합되는 수소 원자는 NADPH가 NAD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분리된 것이다.

➡ 이황화 글루타티온은 이후에 다시 수소 원자 두 개를 얻어 두 개의 글루타티온이 되는데……

주목 이때 수소 원자 두 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두 개의 NADPH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생산한 NADPH가, 그 내부의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이황화 글루타티온에 수소 원자를 제공하고 남은 두 개의 NADP는 다시 '오탄당 인산화 경로'를 거쳐 두 개의 NADPH가 될 것이다[문단3-2)].

문단 5 G6P의 경로 결정

1) 세포 내부에서 G6P가 당 분해 경로와 오탄당 인산 경로 중 어디로 진입할 것인지는 NADPH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 마지막으로 ❸에 대한 설명이다[문단1-2)].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세포 내부의 NADPH 농도가 향후 생성될 과산화 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을 때에 NADPH가 G6PD의 작용을 억제하여 G6P가 당 분해 경로로 진입한다.

➡ '당 분해 경로'를 거치면 과산화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제거하려면 '충분한 농도의 NADPH'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포 내부에 NADPH의 농도가 충분하다면, '당 분해 경로'를 거친다.

➡ 반대로 NADPH의 농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NADP의 농도가 높아서, 다시 그로부터 NADPH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오탄당 인산 경로'를 거친다.

NADPH 농도↓ ⇨ G6PD 억제↓ ⇨ 오탄당 인산 경로
NADPH 농도↑ ⇨ G6PD 억제↑ ⇨ 당 분해 경로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말라리아는 심한 발열 증상을 동반하는 전염병으로, 적혈구나 간세포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될 때 발병한다. 그런데 ⓐ 유전적으로 G6PD 결핍증이 있어서 G6PD가 부족한 사람은 ⓑ G6PD 결핍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말라리아에 강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세포에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은 독성 물질인 과산화 수소에 의해 사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 G6PD가 부족하면 '오탄당 인산 경로'를 거칠 수가 없다. 즉 충분한 양의 NADPH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세포 내부에 과산화 수소가 많이 남게 된다. 그런데 말라리아 원충은 '과산화 수소'에 의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G6PD이 부족한 상황은 오히려 말라리아 원충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G6PD 결핍증이 있는 사람 : NADPH↓ ⇨ 과산화 수소↑
G6PD 결핍증이 없는 사람 : NADPH↑ ⇨ 과산화 수소↓

2) 한편 말라리아 환자에게는 체내 세포에서 포도당 없이 과산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약물인 프리마퀸을 흔히 사용한다. 단, 과산화 수소는 말라리아 원충을 사멸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로 전환되거나 양이 변하지 않는다.

➡ 말라리아 환자에게 사용되는 '프리마퀸'은 세포 내부에 과산화 수소를 늘린다. 이를 통해 말라리아 원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과산화 수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말라리아 원충을 잘 제거하지 못하는, 'G6PD 결핍증'이 없는 사람에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G6PD 결핍증이 있는 사람인 ⓐ에게 프리마퀸을 투여하면 세포 내부에 과산화 수소가 더 많아진다. 이를 제거하려면 NADPH가 NADP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ADPH의 농도가 낮아진다. 그런데 NADPH의 농도가 낮아지면 그로 인해 G6PD의 작용도 덜 억제된다[문단5-2)]. 따라서 ①번 선지가 적절하다.

➡ G6PD 결핍증이 있다고 해서 G6PD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서는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번 선지에서 '존재하지 않는 G6PD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또한 G6PD 결핍증으로 인해 '오탄당 인산 경로'를 거치지 못할 테니, 'NADPH가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는 데에 전부 소모되어 G6PD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어도 잘못된 판단이다. 오탄당 인산 경로는 NADPH를 생산하는 유일한 물질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문단1-2)]. 즉 NADPH가 '부족'할 뿐이지,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2~27] 고전시가

(가) 「단가육장」

– 이신의 –

수록 지문 평가

작가가 인목 대비를 폐하려는 광해군에게 직언하다가 변방 지역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쓸쓸하고 시름 많은 유배 생활 속에서도 선비의 올곧은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제 2장 현재 상황에 대한 한탄과 미래에 대한 기대

남산에 많던 솔(= 소나무)이 어디로 갔단 말고

➡ '남산'은 대궐을, '솔'은 충성된 신하들을 빗댄 것이다. 초장은 조정에 있던 수많은 충신들이 모두 파직이나 유배 등에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난(亂) 후 부근(斧斤,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그다지도 날랠시고

➡ '난'은 계축옥사를 가리킨다. '부근'이 날래다는 말은, 정권을 장악한 대북파가 자기 정파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조정에서 몰아낸 일을, 도끼로 '솔'을 베어 내는 행위에 빗댄 표현이다.

참고 계축옥사는 대북파가 역모 혐의를 꾸며 내어 서인, 남인, 소북파 등 나머지 당파들을 몰락시킨 사건이다.

두어라 우로(雨露)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 두어라. 비와 이슬이 풍족히 내리기만 하면 [소나무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하노라.

➡ 좋은 시절이 오면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좋은 시절이 온다는 것은 현재의 사태를 주도한 대북파의 실각(= 세력을 잃음), 임금이 마음을 돌리는 일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날이 온다면 화자도, 쫓겨난 다른 충신들도 조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우로'는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흔히 하늘이나 부모, 임금이 베푸는 은혜를 빗대어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우로지택(= 이슬과 비의 덕택이라는 뜻으로, 왕의 넓고 큰 은혜를 이르는 말)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은혜를 의미한다.

제 3장 봄날의 한탄

창밖에 세우(細雨, 가늘게 내리는 비)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謫客,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봄비가 내리고 제비가 날아와 봄을 알리고 있다. 봄이 오니 마음이 더욱 싱숭생숭한 것이다.

저 제비 나는 것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 제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자신은 유배지에 묶인 몸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4장 시름에 빠진 적객의 심정

적객에게 벗이 없어 들보 위의 제비로다

→ 귀양살이하는 나에게는 벗이 없으니, [벗이라고는] 들보 위에 앉은 제비뿐이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너보다도 많노라

→ 아아, 내가 풀어내는 시름이 너보다도 더 많구나.

➡ 종일 지저귀는 제비를 보며 무슨 할 말이 저리도 많은가 하고 생각했는데, 문득 다시 생각해 보니 자신이 풀어내는 시름이 제비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제비와 견줌으로써 시름에 빠진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제 5장 달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달램

인간(人間, 인간 세상)에 유정(有情)한 벗은 명월(明月)밖에 또 있는가
→ 세상에 인정 있는 벗은 명월 외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않고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천 리나 되는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니
➡ 밝은 달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정 있는 벗이라고 한 이유는 '명월'이 한양에서 이곳 변방 유배지까지 따라왔기 때문이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화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 아아, 옛날부터 사귄 반가운 벗이 너뿐인가 하노라.
➡ 한양에서 보던 달과 유배지에서 보는 달이 다를 리 없으니, 유배지에서 보는 '명월'을 '반가운 옛 벗'으로 표현했다.

[28~31] 현대소설

「삼대」

– 염상섭 –

수록 지문 평가

방대한 장편 소설의 한 부분이라 전체를 아우르기는 쉽지 않다. 전제된 상황은 지문에서 언급되는 정도로만 읽어 두고, 덕기와 병화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자.

경성 제국 대학의 법문과에 지원을 하였다가 실패한 병화가 일 년을 부모가 있는 해주로 내려가서 다음 해의 입학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 년을 뒤떨어져서 경도(= 일본의 도시 이름인 '교토'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로 왔을 때 병화는 덕기더러 이런 소리를 하였다.

"아버지는 동지사(경도에 있는 대학이다) 신학부에 들어가거나 거기서도 안 되거든 동경으로 가서라도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시기에 네—그러겠습니다 하고 떠나오긴 했지만, 난 목사 노릇은 아니 할 텔세. 목사는커녕 사실 내 짐 속에는 바이블(성경책)도 없네."

➡ 병화는 경성, 즉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였다가 떨어진 1년 뒤 신학부에 진학하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고 경도로 유학을 떠나왔다.

이 말을 들을 때 덕기는 친구의 말에 놀라기보다는 내심으로 반색을 하였었다. 종교 생활에 대하여 병화처럼 노골적으로 대담히 반기를 들 수 없이 머뭇머뭇하고 있던 차에 옛 동무—더구나 같은 처지[→ 병화처럼 아버지로 인해 신앙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덕기]에 놓인 교회 동무가 이러한 말을 할 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다면 당장 학비가 오지 않을 게 아닌가? 더구나 자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입학만 되면 교회 속에서 학비라도 끌어내실 작정일 텐데……?"[→ 학비가 끊길 병화를 걱정하는 덕기]

병화의 집이 그리 넉넉지 않은 것을 아는 덕기는 그때부터 이러한 염려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야 내가 자네보다 더 생각했겠지! 하지만 몇 해 동안 학비 얻어 쓰자고 자기를 팔 수야 있나?—자기의 신념을 팔 수야 있나?[→ 학비 때문에 신념을 버릴 수는 없다는 병화] 만일 신앙을 잃고서 그 잃은 신앙의 내용을 공부한다면 그건 대관절 무엇인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나더러 유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배신하여 그를 팔아넘긴 인물)가 되란 말이 아닌가? 그보다도 송장 빼놓고 장사 지내는 걸세 그려! 죽은 자식의 수의는 지을지언정 파묻은 자식의 설빔을 짓는 사람은 없겠네그려? 여보게, 사리가 그렇지 않은가?"

그때의 병화는 이렇게 떠들어놓으며 기고만장이었다.

➡ 신학을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병화는 신앙이 없는 채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시신이 없는 채 장사를 지내는 것, 죽은 자식의 새 옷을 짓는 것에 비유하며 학비 때문에 신념을 버릴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병화는 사회주의 사상을 품고 귀국하여 아버지의 집을 나와 무산 계급 운동에 참여하고, 덕기는 그에게 가끔 물질적 지원을 한다.

덕기는 딱한 듯이 친구의 술잔을 바라보다가,

"그리 말고 그야말로 타협을 하고 댁으로 들어가게. 언제까지 이런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방랑 생활을 하고서 무슨 일이 되겠나?"
하며 진담으로 권고를 하여 보았다.

"타협? 자네 따위의 하염직한 소릴세!"
하고 병화는 코웃음을 친다.

➡ 떠도는 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의견[→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견]을 수용하라는 덕기의 말에, 병화는 대지주 집안 출신으로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는 덕기와 달리 자신은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한다.

"요컨대 아버지와 타협이 아니라 밥하고 타협하고 밥을 옹호하는 부르주아(= 자본가 등 재산이 많은 사회 계급)의 파수 병정하고 타협을 하라는 말이지?"[→ 물질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원칙에서 후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담은 말이다.]

"부자간에 그런 이론을 세워서 담을 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수작인가? 타협이 아니라 이용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 덕기는 병화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표현을 바꾸고 있다. 타협이 자신의 신념을 일정 정도 양보하는 것이라면, 이용은 자신의 신념은 그대로 둔 채 상대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계산적인 행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부자간에 이용이란 말은 되는 말인가? 하여간에 자기의 직업적 신앙에 따라오지 않고 입내를 내지 않는다고 내쫓는 부모면야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나 노예가 아닌 이상, 자식도 제 생활이 있는 이상 어찌하는 수 없지 않은가?"

병화는 취기와 함께 점점 열변이 되어 간다.

"이용이라는 말은 자네 부친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닐세. 자네 말마따나 밥을 옹호하는 부르주아의 파수 병정을 이용하는 것은 해로울 게 없다는 말일세……. 그는 하여간에 부자간 윤리라는 것이야 어찌하는 수 없지 않은가? 거기에는 타협이니 이용이니 하는 문제가 애초에 붙을 리가 있나!"

덕기는 자기가 꺼내 놓은 타협이니 이용이니 하는 말을 병화가 부자간 관계를 두고 한 말인 줄 오해할까 보아 또 한 번 다졌다.

"여보게, 이용이고 무어고 자기가 먼저 이용될 각오를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저편이 이용될 리가 없지 않은가? 내가 자네를 이용하려면 자네는 순순히 되겠나?"[→ 상대를 이용하려 하면 상대 역시 자신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용되어 가지 않는가?"[→ 덕기가 병화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며 덕기는 웃었다.

"오, 가끔 돈 원간 돌려주니까?"
하고 병화는 분연히 직통을 쏜다.

"조그만 이용이지만 그것도 이용은 이용이지!"
하며 덕기는 또 냉소를 하다가,

"자네는 아까도 곧 절교라도 할 듯이 날뛰데마는 나 같은 놈은 실상은 있어 필요한 걸세."

➡ 병화는 부유한 집안 출신인 덕기와 처지 및 입장의 차이를 느끼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선 덕기에 대해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냈었다. 이에 덕기는 자신이 집안과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화에게 돈푼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다.

하고 입을 다문다.

"무엇이……?"

"위선 자네에게라도……."
덕기는 냉연히 대답을 한다.

"정말 우정에는 이용이란 것이 없는 걸세. 더구나 동지애면야……."

➡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는 어떤 계산도 없으므로, 손익을 계산하고 상대로부터 이득을 취하려 하는 '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동지애'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니고 무산 계급 운동을 함께하는 사이의 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화는 무슨 생각에 팔려 앉았다가 한마디 내놓는다.

"소위 동지애—동지의 우정이란 점으로는 자네게 불만일지 모르네. 그러나 어쨌든 자네만이 괴로운 것은 아닐세……."

➡ 덕기는 자신이 병화와 같은 처지나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이 병화에게는 불만일 테지만 부유한 집안 출신인 자신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다.

덕기는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런 건 부르주아의 호사스러운—호강스러운 고통이요, 센티멘털한 눈물이겠지."

병화는 또 비꼰다.

"자네 같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위선 우리 집안—삼대가 사는 우리 집안 속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걸세……."[→ 덕기의 고민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자네가 할아버지나 아버지께 타협하듯이 나더러도 타협 타협 하네그려? 그야 상속받을 것도 있으니까!"[→ 덕기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니 자신에게 그렇게 '타협'을 운운하는 것이라고 비꼬는 병화]
하고 병화는 또 시달려 본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